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04,149,238	57,124,477
일반회계	1,670,323,970	50,109,719
특별회계	233,825,268	7,014,758
공기업특별회계	163,016,787	4,890,50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4,871,932	746,1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3,249,180	1,897,47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895,675	2,246,870
기타특별회계	70,808,481	2,124,254
주택사업특별회계	270,118	8,104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975,440	149,26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58,851	16,766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796,044	203,881
교통사업특별회계	23,741,457	712,244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2,589,999	977,70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876,572	56,29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71,529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6,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후 통보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